

「직원 성과급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16. 2. 29. 개정 판 (시행 2016. 3. 1.) → 2021. 1. 22. 개정 판 (시행 2020. 9. 1.)

바뀜 5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164/compare?from=409&to=1060>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6:53:18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성과상여금 추가지급)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과상여금 외에 성과상여금을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다. 1. 최우수 친절직원으로 선발된 직원 또는 모범직원 2.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제5조(성과상여금 추가지급)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과상여금 외에 성과상여금을 관련 지침(별표1)에 따라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1-01-22) 1. 최우수 친절직원으로 선발된 직원 또는 모범직원 2.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3. 특별사업 위원회 또는 TFT를 구성하여 각종 재정지원사업 또는 특별활동 등을 통해 본교 행재정에 현저하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개정 2021-01-22)
제6조(성과상여금 삭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1. 대학에 물질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직원회의나 채플에 불참하는 정도가 규정에 미달일 경우(규정 미달이라함은 교회정기 예배와 아침채플 참석률이 80% 이하를 의미함) 3. 당해 연도에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조건표상 최저지급율을 적용한다. 4. 당해 연도에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5.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삭감 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제6조(성과상여금 삭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1. 대학에 물질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직원회의나 채플에 불참하는 정도가 규정에 미달일 경우(규정 미달이라함은 교회정기 예배와 아침채플 참석률이 80% 이하를 의미함) 3. 당해 연도에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조건표상 최저지급율을 적용한다. 4. 당해 연도에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5.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삭감 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u>인성교육원장</u>, 재무실장, <u>사무부처장</u>, <u>예산팀장</u>, 교수(4)로 한다. (개정 2016-02-29)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01-22) ②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u>사무처장</u>, 대외협력처장, 연구<u>산학</u>처장, 입학관리본부장, 재무실장, 예산팀장, <u>기획평가팀장</u>, 교수(2), <u>직원(1)</u>으로 한다. (개정 2016-02-29)(개정 2021-01-22)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제10조(기능) 본 위원회는 제 11조(직원 성과상여금 평가)에 의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제반 사항(지급기준, 지급율, 기준액, 기타)을 심의한다. (개정 2016-02-29)	제10조(기능) 본 위원회는 제 11조(직원 성과상여금 평가)에 의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제반 사항(지급기준, 지급율, 기준액, 기타)을 심의한다. (개정 2016-03-01)

현행	개정안
제11조(직원 성과상여금 평가) ① 직원의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내 용 전체 비중 등 급 S A B C D 근무평정 다면평가 시행적용 S: 95점이상, A: 90~95미만, B: 85~90미만, C: 80~85미만, D: 80점미만 80% 70 65 60 55 50 부서평가 1. 소행협위원이 평가(항목: 업무량, 중요도, 보상현실, 이미지, 발전기여도) 기본 3개의 행정시스템으로 분류(사무기획, 시설관리, 대민서비스) 3. 각 부서를 S, A, B로 분류(각 등급별 균등 할당) 4. 평가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뺀 나머지 평균치로 처리 20% 20 18 16 14 12 합계 100% 기타 1. 자녀수(0명 - 0점, 1명 - 1점, 2명 - 2점, 3명이상 - 3점) 2. 사회봉사(1회 1점, 2회 2점, 3회이상 3점, 헌혈포함) 3. 자격증(국가공인 1개2점, 2개이상 3점) 4. 승급지연 년한 : 각 급수별 승급 이후 경과 년수(승급지연에 대한 보상, 단, 승급점수 규정에 미달되어 승급이 누락된 경우 경과 년 수에 관계없이 1점만을 부여함) (5년차이상 5점, 4년차 4점, 3년차 3점, 2년차 2점, 1년차이하 1점) ☆ 교육/사회봉사 1회기준 : 8시간(1일) ☆ 봉사, 자격증 당해년도만 해당	제11조(직원 성과상여금 평가) ① 직원의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내 용 전체 비중 등 급 S A B C D 근무 평정 다면평가 시행적용 S: 95점이상, A: 90~95미만, B: 85~90미만, C: 80~85미만, D: 80점미만 80% 70 65 60 55 50 부서 평가 1. 소행협위원이 평가(항목: 업무량, 중요도, 보상현실, 이미지, 발전기여도) 기본 3개의 행정시스템으로 분류(사무기획, 시설관리, 대민서비스) 3. 각 부서를 S, A, B로 분류(각 등급별 균등 할당) 4. 평가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뺀 나머지 평균치로 처리 20% 20 18 16 14 12 합계 100% 기타 1. 자녀수(0명 - 0점, 1명 - 1점, 2명 - 2점, 3명이상 - 3점) 2. 사회봉사(1회 1점, 2회 2점, 3회이상 3점, 헌혈포함) 3. 자격증(국가공인 1개2점, 2개이상 3점) 4. 승급지연 년한 : 각 급수별 승급 이후 경과 년수(승급지연에 대한 보상, 단, 승급점수 규정에 미달되어 승급이 누락된 경우 경과 년 수에 관계없이 1점만을 부여함) (5년차이상 5점, 4년차 4점, 3년차 3점, 2년차 2점, 1년차이하 1점)

현 행	개 정 안
+α ㉔ 제11조 ①항의 평가에 대한 상대평가 적용조건표는 직종별(일반 · 기술 / 기능)로 상위비율로 정한다. 단, 기타영역은 성과상여금 평가 후(근무평정, 부서평가) 성과상여금 지급률에 130%를 상회하지 않는 조건에서 추가 적용한다. ㉕ <u>특별사업 위원회 혹은 TFT 참여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별도로 지침을 둔다.(신설 2016-02-29)</u> 상대평가 상위 비율(%) 성과상여금 지급률(%) 0 10 130 11 20 120 21 30 110 31 70 100 71 80 90 81 90 80 91 100 70	☆ 교육/사회봉사 1회기준 : 8시간(1일) ☆ 봉사, 자격증 당해년도만 해당 +α ㉔ 제11조 ①항의 평가에 대한 상대평가 적용조건표는 직종별(일반 · 기술 / 기능)로 상위비율로 정한다. 단, 기타영역은 성과상여금 평가 후(근무평정, 부서평가) 성과상여금 지급률에 130%를 상회하지 않는 조건에서 추가 적용한다. 상대평가 상위 비율(%) 성과상여금 지급률(%) 0 10 130 11 20 120 21 30 110 31 70 100 71 80 90 81 90 80 91 100 70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직원 성과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성과상여금 추가지급)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과상여금 외에 성과상여금을 관련 지침(별표1)에 따라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다

1. 최우수 친절직원으로 선발된 직원 또는 모범직원
2.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3. 특별사업 위원회 또는 TFT를 구성하여 각종 재정지원사업 또는 특별활동 등을 통해 본교 행재정에 현저하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제6조 중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를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관리본부장, 재무실장, 예산팀장, 기획평가팀장, 교수(2), 직원(1)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제10조 중 "2016-02-29"를 "2016-03-01"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직원 성과상여금 평가) ① 직원의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내 용

전체

비중

등 급

S

A

B

C

D

근무

평정

다면평가 시행적용

S: 95점이상, A: 90~95미만, B: 85~90미만, C: 80~85미만, D: 80점미만

80%

70

65

60

55

50

부서

평가

1. 소행협위원이 평가(항목: 업무량, 중요도, 보상현실, 이미지, 발전기여도)

기본 3개의 행정시스템으로 분류(사무기획, 시설관리, 대민서비스)

3. 각 부서를 S, A, B로 분류(각 등급별 균등 할당)

4. 평가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뺀 나머지 평균치로 처리

20%

20

18

16

14

12

합계

100%

기타

1. 자녀수(0명 - 0점, 1명 - 1점, 2명 - 2점, 3명이상 - 3점)

2. 사회봉사(1회 1점, 2회 2점, 3회이상 3점, 헌혈포함)

3. 자격증(국가공인 1개2점, 2개이상 3점)

4. 승급지연 년한 : 각 급수별 승급 이후 경과 년수(승급지연에 대한 보상, 단, 승급점수 규정에 미달되어 승급이 누락된 경우 경과 년 수에 관계없이 1점만을 부여함)

(5년차이상 5점, 4년차 4점, 3년차 3점, 2년차 2점, 1년차이하 1점)

☆ 교육/사회봉사 1회기준 : 8시간(1일)

☆ 봉사, 자격증 당해년도만 해당

+α

② 제11조 ①항의 평가에 대한 상대평가 적용조건표는 직종별(일반 · 기술 / 기능)로 상위비율로 정한다. 단, 기타영역은 성과상여금 평가 후(근무평정, 부서평가) 성과상여금 지급률에 130%를 상회하지 않는 조건에서 추가 적용한다.

상대평가 상위 비율(%)

성과상여금 지급률(%)

0≡ 10

130

11≡ 20

120

21≡ 30

110

31≡ 70

100

71≡ 80

90

81≡ 90

80

91≡ 100

70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